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

# 제 안 설 명 서

2022.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인 자연숲어린이집 수탁자(원장)의 위탁 계약해지 요청서를 2022. 2. 3. 제출함에 따라,
- 「영유아보육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어린이집 위탁체(자)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연숲어린이집은 대곡동 LH천년나무아파트 내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써 연면적 363.03㎡, 2월말 현재 정원은 67명, 현원은 44명, 보육교직원이 13명인 시설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 수탁자(원장)가 2019. 9. 1.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초 위탁기간은 2019. 9. 1.~2024. 8. 31.이었으나 수탁자(원장)의 건강상의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 결과

행정절차 진행 및 보육공백 방지 등을 감안하여 2022. 4. 30일자로 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은 아동 입소·상담, 보육교직원 인사, 회계, 시설 및 물품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 5. 1.~2027. 4. 30. 까지(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3월 의회 동의 후, 3~4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위탁체(자)를 접수하고 4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             |                    |
|-------------|--------------------|
| 의<br>번<br>호 | 안<br>호<br>00822032 |
|-------------|--------------------|

제출일자: 2022. 3. 4.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 1.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인 자연숲어린이집 수탁자(원장)의 위탁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자연숲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함

##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라. 위탁시설 현황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규모<br>(면적, m <sup>2</sup> ) | 정원 | 운영방식 | 비고 |
|---------|------------------------------|-----------------------------|----|------|----|
| 자연숲어린이집 | 갈밭로 33(대곡동,<br>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 | 363.03                      | 67 | 민간위탁 |    |

## 마. 위탁기간: 5년(2022. 5. 1.~2027. 4. 30. 예정)

##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
- 지역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 3. 참고사항

- 자연숲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위탁체 선정 계획: 붙임 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불임 1 위탁체 선정 계획

# 자연숲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위탁체 선정 계획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 수탁자(원장)의 위탁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과 이용아동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집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

## I 추진방향

- 위탁체의 능력과 자격, 운영실적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 선정기준과 심사내용을 공지하여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I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 보건복지부 지침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III 대상 어린이집 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위탁체<br>(원장) | 시설규모<br>(연면적)        | 정원<br>(현원)   | 보육<br>교직원 | 위탁기간                         |
|-------------|------------------------------|-------------|----------------------|--------------|-----------|------------------------------|
| 자연숲<br>어린이집 | 갈밭로 33 (대곡동,<br>H천년나무1단지아파트) | 박미정         | 363.03m <sup>2</sup> | 67명<br>(44명) | 13        | 2019. 9. 1.<br>~2024. 8. 31. |

## IV

## 해지 및 위탁 개요

- 해지일자: 2022. 4. 30.
- 해지요청사유: 건강상의 이유
- 위탁기간: 2022. 5. 1.~2027. 4. 30.(예정)

## V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감안하고 민간이 가진 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
  - 검토 및 자문: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백지혜 교수,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은진 교수

| 민간위탁 적정성<br>검토 내용       | 검토 결과   |
|-------------------------|---|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br>수행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운영은 교육 분야가 강조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유아 교육의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함</li> <li>◦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li> <li>◦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어린이집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교육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li> </ul> |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br>및 안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및 지도·점검, 공통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li> </ul>  |
| 3. 경제적 효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수준이 확보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교육의 비용 절감</li> <li>◦ 위탁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의 특성과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가능</li> <li>◦ 전문인력 구성과 채용에 유연성 확보</li> </ul>  |

| 민간위탁 적정성<br>검토 내용          | 검토 결과   |
|----------------------------|---|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br>기술 활용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두터우며, 실무와 교육 경력이 운영에 투입되기에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자원 활용 적절함</li> <li>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가능함</li> </ul>                 |
| 5. 성과 측정의 용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기관, 동일 성과 기준 적용으로 각 기관의 달성을 대한 비교 측정 용의</li> <li>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li> <li>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받으므로 총제적인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자가체크 및 모니터링 가능</li> </ul> |
| 6. 관리 및 운영의<br>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li> </ul>   |
| 7. 민간의 서비스공급<br>시장여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가 충분하며 확보 가능</li> <li>지역 내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li> </ul>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운영체 모집

### ○ 신청자격

####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단체, 개인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적합한 자

#### 나. 개별사항

- 법인 · 단체(원장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 이상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 · 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 ·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 ·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단체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 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자
- 그 밖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운영체 모집 및 접수

- 공고기간: 2022. 3. 25.(금)~4. 14.(목)
- 접수기간: 2022. 4. 7.(목)~4. 14.(목)

- 공고방법
  -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 위탁대상시설 현황
  - 위탁기간 및 신청자격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선정기준, 방법 및 위탁조건 등
-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 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접수장소: 달서구청 별관 6층 여성가족과(보육팀 ☎ 667-3524)
- 제출서류: 【붙임 7】 참조
  - 제출부수: 접수기간 내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제본)
    - ※ 최종 면접심사대상(추후 개별통보): 사본 13부, 발표자료(PPT) USB 제출
    - ※ 접수와 최종심사 시 사본은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추가서류 제출불가 및 접수 후 제출 내용 변경 불가

##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심사개요

- 일 시: 2022. 4월 중
- 장 소: 4층 회의실 또는 달서충무관
- 심사위원: 달서구보육정책위원
  - ※ 수탁기관 및 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에서 배제
  - ※ 사전검토를 위해 심사서류 및 심사기준안을 심사일 3일전에 위원에게 송부
  - ※ 심사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안내와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 서약서 징구 【붙임 2】
- 심사안건: 자연숲어린이집 내 의무보육시설 위탁체 선정

- 심사내용: 5개 분야 10개 항목

⇒ 어린이집운영계획(3),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4),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 운영체의 공신력(1), 운영체의 재정능력(1)

## ○ 심사기준

⇒ 어린이집 위탁체심사 기준점수표 【붙임3, 4】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 서류심사(1차): 5배수 선정

| 총계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
| 40점 | 25                | 10       | 5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2차)에 모두 참여

- 면접심사(2차 최종):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총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
| 100점 | 40        | 35                | 10           | 10       | 5         |

- 발표일시: 추후 통보
- 발표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순
- 심사방법: 심사당일 신청자가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정도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자: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 법인·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위탁체(자)로 결정함

-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2차 면접심사 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 순으로 결정

## ○ 심사결과 공개

- 일 시: 2022. 4월 중
- 방 법: 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사항

###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 운영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일로부터 60일 후에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 VI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 3. 3.
- 위탁체 공고 및 신청서 접수: 3. 25. ~4. 14.(예정)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심사: 4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4월 중
- 개 원: 5. 1.(예정)

## 불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운영은 교육 분야가 강조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함</li> <li>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li> <li>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어린이집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교육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li> </ul> |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및 지도·점검, 공통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li> </ul>   |
| 3. 경제적 효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수준이 확보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교육의 비용 절감</li> <li>위탁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의 특성과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가능</li> <li>전문인력 구성과 채용에 유연성 확보</li> </ul>   |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두터우며, 실무와 교육 경력이 운영에 투입되기에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자원 활용 적절함</li> <li>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가능함</li> </ul>  |
| 5. 성과 측정의 용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기관, 동일 성과 기준 적용으로 각 기관의 달성도에 대한 비교 측정 용의</li> <li>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li> <li>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받으므로 총제적인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자가체크 및 모니터링 가능</li> </ul>   |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li> </ul>  |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가 충분하며 확보 가능</li> <li>지역내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li> </ul>  |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 제15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